



-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0. 1.



안대국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제안 설명서

설 명 자: 안대국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인구와 노동력 감소,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출산장려와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 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신청, 환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중복지원의 제한에 대해 규정하였고,
- 안 제12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19. 11. 26일부터 2019. 12. 6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집행부는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 경비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대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72058
----------	---------

발의일자: 2019. 11. 25.

발 의 자: 안대국,이성순,서민우,박종길,윤권근  
박정환

## 1. 제안이유

-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노동력 감소 및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출산장려와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신청, 환수(안 제4조~안 제8조)
- 다.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10조)
- 라. 포상(안 제12조)

##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 4. 비용추계: 80,000천원(2020년의 경우, 구비 100%)

- 산출근거: 약 400명(2007년 셋째아 이상 출생자 수) × 200천원 = 80,000천원
- 셋째아 이상 출생자 수 현황(※ 해당부서 제출 자료)

구분(연도)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u>2007</u>
출생아 수(명)	223	342	381	455	454	386	481	447	462	356	347	<u>439</u>

## 5.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2. “신청인”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가정의 부 또는 모, 세대주를 말한다.
3. “입학준비금”이란 중학교 입학 시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4. “사용료 등”이란 달서구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이용료 등을 말한다.
5. “아이조아카드”란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장려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달서구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 등에 대하여 다자녀 가정에게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의 감면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이조아카드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자는 중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는 셋째 이상 자녀로 중학교 입학생으로 하며 대상자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제6조(지원기준 등)** 입학준비금은 입학년도에 한해 2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은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제5조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등)** 동장은 다자녀가정 지원 신청서 및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아니 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 등의 이  
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4조제2호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출산장려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
2. 다자녀가정 중 모범 가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시책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은 2020년 중학교 입학생  
부터 적용한다.





## [관계법령]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